「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3

대한민국 정부

목 차

1. 개 요 1
1. 관련 규정
II. 2018년 주요 성과 및 한계 ····· 2
Ⅲ. 2019년 정책 추진방향5
Ⅳ.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계획7
1.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7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 7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9
2. 남북 대화112-1) 남북대화 정례화·상시화112-2)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13
3. 남북 교류협력15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15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17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19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194-2) 남북경협 준비20

5. 인도적 협력 22
5-1)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22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24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25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7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27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 29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30
ㅁ4) 테보기웨세 기위 그미기 취사하면 그후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30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33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35
V.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조달 ······ 38

붙임 1.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붙임 2. 2019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붙임 3. 2019년 통일부 일반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

붙임 4. 과제별 소관부처(청) 현황

I.개요

1 관련 규정

- o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수립
 - 확정된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
 - * 다만,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을 비공개 가능(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

-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립 경과

- o 통일부는 '18.12월~'19.2월 동안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9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
 - 총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의 수립에 참여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병행
-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 3.11~18)하여 '19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통일부장관이 수립 확정

Ⅱ. 2018년 주요 성과 및 한계

- □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와 이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복원
- o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 개최 및 남북 특사단 교환 방문 등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
- o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획기적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해소,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
 - ※ 남북관계 주요지표 변화(* 2017년 對 2018년)
 - ▲남북회담 개최(0회 → 36회), ▲남북 왕래인원(115명 → 7,163명), ▲이산 가족 상봉인원(0명 → 833명), ▲북한 도발(16건 → 0건)
- □ 남북공동선언 이행과정에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확대·일상화되고, 한반도에 평화국면 조성
 - o 정상간 합의 이행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체계화(정상회담→고위급회담→ 분야별 회담)·상시화(9.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기반 구축
 - * '18년 동안 총 36회 남북회담 개최(정치 18, 군사 4, 경제 5, 인도 3, 사회문화 6), 23건의 합의서·공동보도문 체결
 - o 남북 교류협력은 사회·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추진, 남북화해·협력 분위기 확산
 - 국제체육대회에 남북이 공동참가, 단일팀 구성·메달 획득을 통해 민족 역량·단합 과시
 - * ▲ 평창동계올림픽, ▲ 2018 아시안경기대회, ▲ 탁구·유도·사격 등 국제대회
 -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 △민관합동행사 개최 등 분야별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 지속
 - * ▲남북예술단 상호 방문공연(북한예술단 2.8~11/우리측예술단 3.31~4.3), ▲민관합동「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10.4~6. 평양) 등

- 3년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8.20~26, 833명)되었으며, 화상상봉· 영상편지 추진에도 합의
- 민간·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점증,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10.22~12.10) 등 중단된 교류사업 재개
- o 남북 공동대응이 필요한 산림·보건 분야의 협력기반 마련, 철도·도로, 공동특구 등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경주
 - 북한 지역 산림 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협력 및 남북간 전염병 정보교환·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협력 추진
 - * 병해충 현장점검(8.8, 금강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11.29, 개성)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동조사 완료, 착공식 개최(12.26)
- o 남북간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을 통해 군사적 대결구도 청산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토대 마련
 -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발굴, △시범 GP 철수,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진행
 -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10.26,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
 - o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천명(4.27 「판문점선언」)하는 한편, 북한은 구체적 조치 의사 표명(9.19 「평양공동선언」)
 - * ▲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 용의
 - o 2차례 남북정상회담(4.27, 5.26)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로 북미정상회담 (6.12)을 실현시켰으며, 북미대화에 동력을 부여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 촉진

- □ 미국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여건 조성 및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o 한미간 상시적 소통·협의 추진, '워킹그룹'(WG) 등을 통해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 노력 경주
 - o 정상외교·국제회의 등 다양한 차원에서 통일공공외교 활동 전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 확보
- □ 다만, 북미간 후속 협상 지연 등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제약이 있었으며,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 제기
 - o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면서, 남북관계 추가 진전의 제약요인 으로 작용
 - o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인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일정 지연
 - o 10여년만에 남북관계가 재개·정상화됨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한편,
 - 일부 사안의 경우 정치적 쟁점화되는 등 우리 사회내 잠재되어있던 이견·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Ⅲ. 2019년 정책 추진방향

-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은 2018.9월 수립한「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차년도 계획'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추진과제)에 따라 '19년도 시행계획 수립
 - ※ 제3차 기본계획상 남북관계발전 기본방향「붙임 1」참조

1 5개년 정책목표

- 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 ②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③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2 기본 방향

- □ 남북공동선언을 차질없이 이행, 남북관계의 전반적 진전 도모
 - o 남북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 기조 유지하면서, 제반 상황을 고려 하여 각 사업별 추진시기·방식 등을 융통성있게 조정
 - o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은 자율성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o 남북 경협은 향후 본격 추진에 대비, 남북간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 조사 등 사전준비와 여건조성 노력 병행
- □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 경주
 - o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대화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 비핵화·상응 조치 합의 견인 및 이행 촉진
 - o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단계에서 평화협정 추진 논의 착수

- □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기반 구축
 - o 대북정책·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정책에 반영하고, 국회·지자체 등과의 소통을 확대,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에 기반한 대북정책 추진
 - o 미·중·일·러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 우리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긴밀히 공유, 국제적 지지를 기반으로 남북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Ⅳ.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계획

1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 (외교부·통일부·국방부)

□ 18년 실적

- o 남북대화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기반 마련 및 북미대화·북미관계 개선 촉진
 - 남북고위급회담(1.9), 대북특사 파견(3.5~6)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북미대화 용의 확인
 -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종전 선언 등 평화체제 추진, △동창리 미사일 시설 영구적 폐기, △상응 조치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비롯한 추가적 조치 용의 견인
 -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5.26) 등을 통해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6.12) 개최 견인
 - 특사단 방북(9.5), 평양 남북정상회담(9.18~20)을 통해 지연되고 있던 북미대화 재개 견인(10.7 4차 북미고위급회담)
- ο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와 비핵화 병행 진전
 -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 확대 및 당국·민간 차원의 다층적 소통을 통해 우리의 한반도 구상에 대한 이해 제고
 - 한미 워킹그룹(WG) 운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한 양국간 상시소통 체계 구축

□ 추진 계획

ο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비핵화 협상 촉진

-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확보 및 북미간 비핵화 협상 추동
-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적 진전 여건 강화

0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한미 워킹그룹(WG) 등 각급에서 체계적인 소통·조율을 통해 긴밀한 공조 지속
- 중·일·러 등 주요국의 건설적 기여를 견인하고, 양자·다자회의 등 계기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산
-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추진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이해 제고를 위한 통일공공외교 등 소통 확대·내실화
 - *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舊KGF) 운영 확대, ▲「한반도정세라운드테이블」 내실화, ▲미·일·중·러 등 주요국 전문가 대상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o 비핵화 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여 한반도에서 정치적 적대관계 종식 등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노력 지속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통일부·국방부·외교부·문체부)

□ 18년 실적

- ο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긴장 해소 및 평화정착 여건 조성
 -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 (KR/FE) 미실시, 상호 신뢰조성의 단초 마련
 - 「판문점선언」을 통해 △現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서해 평화수역화 추진 등에 합의, 본격적인 평화정착의 전기 마련
 - 남북 군사당국간 상시적 연락채널 정상화 및 장성급 군사회담(6.14, 7.31, 10.26)·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협의
 - * ▲서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재개(7.1), ▲서해지구 군통신 정상화(7.16), ▲동해지구 군통신 정상화(8.15) 등 우발적 충돌방지 체계 구축
- o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 체결·이행
 -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평화 수역 조성 및 안전어로 보장,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지원 등 구체적 조치에 합의, 상당부분 이행 완료
 - *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11.1~), ▲JSA 비무장화(10.26~27 공동검증), ▲DMZ내 상호 시범 GP철수(12.12 공동검증),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11.30) 및 도로 개설(12.7),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11.5~12.9) 등
 - JSA 공동근무·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등 지속 협의·추진

- o「9·19 군사합의서」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 (적대행위 중지) 지·해·공 상호 적대행위 중지 지속 시행
 -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JSA 관리방안 마련 및 공동관리기구 구성·운영, 합동근무·민간 방문객 자유왕래 추진
 - (GP 철수) 시범 GP 철수 성과를 바탕으로 DMZ내 모든 GP 철수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간 협의 추진
 - **(남북공동유해발굴)**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2월) 및 유해발굴(4월) 본격 추진
 -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행정보 (해도) 제작·민간 제공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 안전조치 마련
- o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남북간 군사분야 협력 심화
 - △군사적 긴장완화,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방안 등 정례 협의
- o 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추진
 - 범정부·지자체·민간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DMZ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
 - 당면하여, 「9·19 군사합의서」합의사항 중심으로 성과 도출(△철수 GP 평화적 활용,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 △DMZ 역사유적 공동발굴 등)
 - 여건 조성시,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남북간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방안 모색

2 남북 대화

2-1. 남북대화 정례화·상시화 (통일부)

□ 18년 실적

- ο 남북 정상간 상호 신뢰 구축 및 정상회담 정례화 토대 마련
 - 정상간 수시 소통을 통해 한반도 현안문제에 합의함으로써 이행력 제고, Top-down 방식의 합의·이행체계 정립
 - ※ 남북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 「판문점선언」(4.27): △남북관계 전면적·획기적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 위협 해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방안 합의
 - 5.26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이행의지 재확인 및 북미정상회담 여건 조성
 - 「9월 평양공동선언」(9.18~20):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합의
 - 이를 통해 남북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주도,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견인
- o 남북공동선언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회담 틀 마련 및 회담문화 개선
-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상황 점검 및 추진방향 협의,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체계 정립
 - * '18년동안, ▲남북고위급회담 5회, ▲분야별 실무회담 18회 개최
- 회담 절차·형식 간소화, 대표간 접촉 활성화 등 실용적 회담문화 정립
- o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9.14, 개성), 남북간 상시 소통체계 마련
 - 소장(차관)회의, 부소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북 당국간 현안 상시 논의
 - 의제별 실무회의 개최, 민간 교류협력 협의 지원 등 역할 수행

□ 추진 계획

ο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

- 당면하여,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 계기 마련
-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토대 공고화 및 현안 발생시 정상간 긴밀한 소통 추진

o 남북고위급회담 - 분야별 실무회담 추진체계 유지·발전

-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 남북공동선언 이행 총괄·점검 및 남북대화 동력을 창출하는 실질적 협의기구로 발전
- 분야별 실무회담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의제 발굴 및 수시 개최

o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상시 소통체계 확대·발전

- 소장회의 정례화·내실화 및 남북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상설 정책협의체계 구축 등 각급별 소통체계 마련
- △의제별 실무협의, △공동연구·조사, △민간교류 지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남북대화 지원

ο 남북회담의 인프라 확충 및 회담문화 개선

-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남북회담 지원체계 정립
- 유관부서 회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남북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실용적·효율적 회담문화 정착

2-2.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통일부)

□ 18년 실적

- o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등 지속 가능한 합의 이행기반 마련 노력
 - 비준동의안 제출(9.11) 이후 국회내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여·야간 입장차 지속
 - *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 외통위 회부(9.11), 전체회의 상정(11.8)
- o 남북관계 제도화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 「판문점선언」에서 기존 합의 존중·이행 명시
 - 남북관계 제도화 본격 논의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 검토
- ο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추진체계 정립
 -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감안, 관계 부처간 긴밀하게 협업하는 추진체계 구축
 -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 o 남북관계 제도화 추진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위한 국회와의 협의 지속
 - 「남북기본협정」체결 등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대북협의 추진
 - 남북공동선언 이행 관련, 부처 협의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확대

o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반영 및 향후 남북관계의 전면적 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사항 검토
 - * 통일부內「남북관계발전 법제 T/F」구성·운영('19.2월~)

o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남북기본협정」등 남북관계 제도화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3 남북 교류협력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통일부·문체부·문화재청 등)

□ 18년 실적

ο 당국간 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화해 및 교류협력 확대

- 평창올림픽 이후 △2018 아시아경기대회(8.18~9.2, 자카르타·팔렘방), △남북통일농구대회(7.3~6, 평양),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등을 차질없이 진행
- 민·관 합동「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10.4~6, 평양) 개최, 당국(정부 4, 국회·정당 18, 지자체 7 등 29명)과 민간(시민단체, 문화·예술·학계, 일반 시민 등 93명)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

o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

- △북한주민접촉신고 707건 수리, △방북 6,689명 △방남 809명 등 인적 왕래·접촉 확대
 - * '17년의 경우, △접촉신고수리 199건 △방북 52명 △방남 63명
- △국제유소년축구대회(8.10~19, 평양), △민화협 연대모임(11.3~4, 금강산),
 △아태 평화번영 국제회의(11.14~17, 고양),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 (11.15~18, 평양), △금강산 20주년 남북공동행사(11.18~19, 금강산) 등 개최
-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사업(10.22~12.10) 등 중단된 교류사업 재개 및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 사업도 재개 준비

- o 당국간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체육) △2020 도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진출,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 당국간 협력사업 지속 추진, △축구대회 등 민간차원의 체육교류도 적극 지원
 - (역사·문화협력) △개성만월대 발굴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재개,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 △남북공동 유물복원실 설치,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 등 추진
 - (기타) 문화예술·청소년·여성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0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은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 △지역별 수요·특성, △지자체 역량, △북측 수요 등을 고려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안내
 -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북협의 지원
- o 민간·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상시 소통·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실무협의회」 정례 운영(반기), △분야별 민간 실무협의회(체육·보건의료·문화유산·청년·종교 등) 수시 운영
 - 산림·환경·농축산 등 분야별 '개발협력 정책포럼' 정례 개최 등

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통일부·기재부 등)

□ 18년 실적

- o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 교류협력의 제한·금지·해제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정부 개정안 마련('18.12.13 국회 제출)
 - * '18.12월말 기준 의원 발의 개정안 20건 국회 계류중
- o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 의원 발의안(6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통합 조정안 마련
 - 특구법 제정시 동반개정이 필요한 여타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
- o 남북관계 진전을 반영한 경협·교역기업 보험제도 개선
 - 기업이 자기책임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정비 추진

- o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 정부 및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통합 논의 지원
 - * 주요 개선과제(▲교류협력 제한·금지 절차규정, ▲접촉신고제 개선, ▲「남북 교류협력 지원협회」법적 근거 마련 등)를 중심으로 통합

o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 조속한 국회 통과 협력 및 법률 제정에 대비한 하위법령 등 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o 교역·경협 보험제도 개선

- 기업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역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실질적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ο 기타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 지속

- △통행·통신·통관 개선, △지식재산권·산업표준·경제통계 분야 협력, △북한인력 역량개발, △인구조사사업 등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통일부·기재부·문체부·국토부·산업부 등)

□ 18년 실적

- o 남북정상·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공감대 형성
 - 4.27 남북정상회담 계기, 우리측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설명
 -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공동특구 조성 문제 협의 합의, 제5차 고위급회담(10.15)에서 남북간 특구 조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
- ο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협의체 중심으로 종합계획 수립
 - △사업간 연계성, △남북간 협의 상황 등을 반영, 수정·보완 지속
 - 국책연구기관협의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병행
- o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
 - 「한반도국제평화포럼」(6월), 남·북·중 학술교류(6월),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11월)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협력 기반 마련

- o 분야별 세부 구상 구체화 지속
 - 여건 조성과 사전준비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전문가 협업 하에 지속적으로 구상을 보완·발전
- o 남북공동특구는 사전준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측 종합 계획 수립
 -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협의, 공동조사·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 공감대 조성 노력도 병행

4-2. 남북경협 준비 (통일부·기재부·문체부·국토부·산업부 등)

□ 18년 실적

- o 공동조사·연구 등 철도·도로 연결 사업 추진기반 조성
 -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7.20 동해선, 7.24 경의선), △공동연구조사단회의(7.24, 8.9), △북측구간 현지공동조사(경의선 11.30~12.5, 동해선 12.8~17)
 - **(도로)** △경의선 현지공동조사(8.13~20), △공동연구조사단 회의(8.20, 11.12), △동해선 현장점검(12.21~23), △경의선 현장점검(12.24)
 - (착공식)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12.26, 판문역)
- ο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 논의 및 진행
 - 남북 항공실무회의(11.16, 개성), 남북통신실무회담(11.23, 개성) 개최 등
 -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한강하구 공동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 진행(11.5~12.9)
 - 「9월 평양공동선언」(9.19)을 통해 "여건 조성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에 합의
- o 교역·경협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지원 시행
 - 「교추협」에서 95개사 대상 1,228억원 지원을 결정(9.13)함에 따라, 기업별 지원 실시

- o 여건 조성시, 남북 당국간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 (철도·도로) 추가·정밀조사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 및 세부 추진방안 협의

-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공동이용 확대방안 마련
- (항공) △남북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 문제 협의, △ICAO 등 국제기구와 국제항공로 신설 추진, △국적항공기 운행문제 등 검토
- (기타) △시범 공동어로 추진 문제 검토, △4대 경협합의서 등 관련 합의서 복원 검토

o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

- 사업 재개 여건 조성(「9월 평양공동선언」)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개성공단은 우선 개성공단 현지 자산점검 등을 추진,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원상회복 등 협의·해결 추진

o 민간·지자체 경협사업 준비를 위한 대북접촉 및 방북 지원

- 학술회의 →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 방북 확대 검토
- 남북 경제인들의 경제시설 공동시찰, 교육훈련 등 검토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안정적·효율적인 경협지원 창구 제공

ο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

- 국제사회의 제재 등 상황 고려, 유엔·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교류협력 사업 추진
- 국회 및 대국민 설명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 경협의 투명성 확보

5 인도적 협력

5-1.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통일부·국방부)

□ 18년 실적

- ο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간 합의 도출
 - 「판문점선언」(4.27)을 통해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합의
 - 「9월 평양공동선언」(9.19)을 통해 △상설면회소 복구 및 개소, △이산 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문제 우선 해결 합의
- o 3년만에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8.20~26, 금강산)
 - 남북 총 170가족 833명 상봉, △개별상봉 시간 증가(2→3시간), △객실내 가족식사(도시락), △차량내 통행검사 실시 등 새로운 상봉문화 구현
- ο 향후 본격 교류에 대비,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확산
 -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 실시(91.9% 희망)
 -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11회), △영상편지 제작(1,500편), △유전자 검사(11,245건), △기록물 수집('17~'18년 15,000여건) 및 전시('18.11~'19.2, 오두산 통일전망대), △디지털박물관 운영 등 추진
 -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 남북정상회담·고위급회담·적십자회담 등 계기시, 우리 억류 국민의 조속한 석방·송환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 「전후납북자법」 개정을 통해 신청기간 경과로 피해 위로금 등을 신청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 및 유족 피해 구제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17.11월 개관후 54,000여명 방문)

□ 추진 계획

ο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다각화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속히 복구·개소하여, 이산가족 상시 상봉 추진
 - * 면회소 개소 이전에도 대면상봉 지속 실시
- 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협의를 바탕으로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정례 실시
 - * 해외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북측과의 협의도 병행
- 전면적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과 함께, △고향방문, △우편물·서신교환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방안 모색

o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확산 지속

- 영상편지 제작 사업(1,000편)을 통해 남북간 영상편지 교환 준비
- △유전자 검사(17,000여건), △미상봉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10회) 및 가정 위로방문, △기록물 전시(~'19.2) 및 디지털박물관 운영(연중) 등 추진
-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지속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 △남북대화시 관련 문제 제기, △생사확인·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 추진시 대상자로 포함 추진
- 유엔 등 국제기구 협조를 통한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 지속
- 개정「전후납북자법」시행을 통해 피해위로금 미수령자 구제
 - * 미수령자는 법 시행일('19.3월경)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활성화 및 추모비·추모단 조성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 18년 실적

- o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추진
 -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도 북한인권 증진집행계획」 수립(10.2), 국회 보고(10.4)
 -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17.1~'18.12월말, 1,880명)
- ο 국내외 협력을 통한 북한주민 삶의 질 개선 모색
 -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및 민간단체 합동 워크숍(12.12) 등을 통한 정책 설명, 의견수렴 등 소통 노력
 - 「북한 장애인 권익 증진 국제세미나」(3.26) 개최 등 북한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추진방안 모색

- ο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2019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및 조사 결과를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에 참고·반영
- ο 북한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남북·민관·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북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 및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5월) 등과 연계한 남북간 협력 모색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지속 및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통일부·복지부·산림청 등)

□ 18년 실적

- o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한다는 원칙 견지
 -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분야 우선 지원
 - 남북 당국간 인도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및 국제기구 와의 협력 병행 추진
- o 「9월 평양공동선언」(9.19)에서 남북 정상간 인도적 교류·협력 강화 합의
 -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
 - 남북 보건당국간 협의(11.7, 12.12)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추진
 - * 보건의료 분과회담(11.7): ▲전염병 정보교환·대응체계 구축, ▲전염병 진단·예방치료 협력 강화, ▲포괄적·중장기적 방역·보건의료 협력사업 협의 등 합의
 - * 보건의료 실무회의(12.12):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 실시 이행
- o 인도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추진
 - △인도지원 단체의 접촉신고 62건 수리, △15개 단체 28건 반출 승인(결핵약·분유·밀가루 등)
- ο 남북간 산림분야 협력 추진
 - △산림협력분과회담(7.4, 10.22) 개최, △병해충 현장 공동점검(8.8, 금강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11.29, 개성 / 약제 50톤 제공), △평양 현장 방문(12.11~13) 등

□ 추진 계획

ο 당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

- 분과회담('18.11월)에서 합의한 보건의료협력 방향을 토대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
- 전염병 정보교환을 체계화·정례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협력 등 공동대응체계 구축
-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에 대한 협력 확대

ο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및 민관 협력 강화

- 대북협의, 유엔제재 면제 절차 지원 등 민간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대북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ο 국제기구 공여 추진 및 대북지원 국제 네트워크 강화

- 국제기구의 취약계층·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 추진
- 남 북 국제기구 3자 평가회의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북지원 거버넌스 체계 확립

o 산림·농축산·환경 등 개발협력사업 확대 추진

- 산림협력 관련,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상시 시행, △양묘장 현대화 협력, △산사태·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협력 분야 확대 지속
- 농축산·환경 등 추가적인 개발협력 사업 발굴,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통일부·복지부·노동부·교육부·농식품부·여가부)

□ 18년 실적

- o 탈북민 맞춤형 취업·창업·영농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자금 지원, △취업 알선, △미래행복통장 제도 운영 등 지속 추진
 - '18년 탈북민 경제활동 참가율은 64.8%로 일반국민(63.4%)을 상회
 - 임금근로자 비율은 작년과 유사하나('17년 85.8% → '18년 86.9%), 질적 측면에서 고용안정성이 다소 강화
 - * 상용근로자 비중 증가('17년 57.4% → '18년 63.5%) 및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 축소('17년 16.5% → '18년 13.9%)
- ο 탈북청소년의 적응력 제고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지속
 - 정규학교내 탈북학생 전담교육사 배정 및 대상별 멘토링 등 추진, 예비대학과정 신설(6개학교) 등 탈북대학생 학교 적응력 제고 지원
 -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시설, △방과후 공부방, △그룹홈 등 지원
- ο 취약 탈북민 보호 강화 및 탈북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비보호결정 제외사유 완화 및 일부 비보호자 대상 주거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 마런, 국회 제출(10.26) 및 통과(12.27)
 - '탈북민 포털' 구축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서비스 개시 및 「하나재단」을 통한 정착금(5종)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19년시행)
- ο 지역사회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 강화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위원에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 포함(2월), '민간협의회'구성(6월) 등 탈북민 지원단체간 정보 공유기반 마련

□ 추진 계획

o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기반 확충

- △재북 전문경력을 연계한 전문직종 양성 지원, △우선구매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탈북민 고용 촉진 등
 -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상 우선구매지원 제도 요건 완화(취업보호자 고용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주, 7월경부터 시행)
- △탈북민 특화 생활밀착형 창업 다양화(네일아트, 옷수선 등), △창업 및 영농 교육·경영컨설팅·자금 지원, △미래행복통장 운영 확대 등

ο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 △특성화 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내 제3국 출생 학생 지원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배치, △예비대학 운영 확대(6곳→10곳),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HOPE·WEST 등) 운영 등
 - * ▲ HOPE : 탈북학생-전문가 1:1 결연을 통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WEST : 5명 내외 탈북학생 대상 18개월간 미국 어학연수 등 제공
- 탈북청소년 정서 안정 및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해도 제고를 위해 가족단위 교육·심리치유 프로그램·심리상담 등 실시

o 탈북민 생활안정 강화 및 거주지 중심의 정착지원 체계 개편

- '18년 법률 개정에 따른 비보호 대상자 축소 및 비보호 탈북민 대상 주거지원 본격 실시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나센터 협력사무소 확충(경기·경남 각 1개)
-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탈북민 포털' 개선 지속 및 탈북민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통합 사례 이력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o 탈북민 지원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 △하나센터 보안인프라 강화(망분리, 인터넷자료저장방지시스템 설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련 제도개선, △『하나재단』내 탈북민 개인 정보 관리 전담인력 증워 등 추진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 (통일부·행안부·문체부 등)

□ 18년 실적

- o 성공적 정착 및 통합 사례 발굴·확산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와 탈북민과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정착 우수사례 발굴(3년간 500여명), △공익광고 등 다양한 컨텐츠와 매체를 활용한 인식 개선 사업 추진
 - △민간공모 사회통합사업, △남북간 가족 결연 등 탈북민과 지역 주민간 교류 확대 사업 추진
- ο 탈북민 지역사회 통합거점으로서 '통일문화센터' 건립 본격 추진
 - '18년 착공, 12월말 기준 전체 공정률 33% 진행

- ο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다양화
 - 모범 정착사례를 토대로 교육·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자체·지역주민 대상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o 통일문화센터 조성 추진
 - '19년말 공사 완료 및 준공허가, '20년 정식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
 - △센터 운영 프로그램(안) 마련, △명칭 공모, △예산 확보 등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 o 탈북민-지역주민간 공동활동 확대·활성화
 - 탈북민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해 남북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활동 지속 추진
 - △유관단체 역량 강화 교육, △지자체 참여 확대 도모 등을 통해 민간공모 사회통합사업의 내실화 추진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통일부·민주평통)

□ 18년 실적

- o 통일문화행사를 통해 일반국민 대상 문화적 소통·참여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통일인식 확산 노력
 -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10월 한달간 매주 행사 유형(관람, 참여·체험, 강좌, 행사) 및 장소(서울·접경지역) 등을 다양화한 통일문화행사 진행
 - * ▲시민참여 뜨개질 아트 전시(10.13~11.5,500여점), ▲DMZ 평화투어(10.21, 136명), ▲통일공감광장(10.26~27), ▲JSA 통일부편 제작·방영(11.6, 11.13)
- ο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 사업 추진여건 조성
 - 민간 주도로, 권역별·세대별·지역별 진영을 망라한 사회적 대화 추진

※ '18년 주요 추진실적

- 평창올림픽·정상회담 계기 사회적 대화(3회, 100여명)
- 권역/진영/미래세대/지역 사회적 대화(20회, 국민 1.500여명 참여)
- 협약 홈페이지 개발(4~7월) 및 운영(8월~)
-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발기인(1,035명) 대회(11.1) 등
- 이를 통해, △대북정책 공론화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국민적 합의 가능성 등 확인,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
- o 시범 통일⁺센터 선정·개소 등 민간-중앙정부-지자체간 지역 협력 거버넌스 기반 구축
 - 광역지자체 신청·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시범 통일+센터 개소(9.10)
 -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 △통일문제 공론화 등 지역사회내 통일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 지역하나센터,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부·인천광역시 합동 근무

- o 통일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업 및 학술회의 지원을 통해 민간의 통일 논의 활성화 도모
 - 통일·북한 문제 관련 연구 및 논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기획패널 사업」 추진
 - △북한연구, △남북협력, △통일문제를 주제로 관련 단체 지원(21개), 단체 선정 과정에서 신진 연구자 참여 비율을 확대, 활동 기회 부여
 - * 단체 지원 현황 : '13년 6개, '14년 9개, '15년 11개, '16년 16개, '17년 16개 단체
 - △통일단체 주관 행사 지원, △장·차관의 통일정책 설명·특강, △ 통일부 후원 명칭 등 민간 분야의 통일활동을 꾸준히 지원

- o 국민참여형 소통·공감의 통일문화행사 개최
 - 주요 계기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체험할 수 있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통일문화행사 추진
 - 특히, 2030 세대 등 젊은층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재 발굴 및 다양한 시각·영상콘텐츠로 제작·전시
- o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본격 개시
 - '민간 주도' 원칙 하에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권역별·지역별·청년세대 대상 참여 규모 확대
 - * 추진일정(안) : ▲계획 수립(2월), ▲권역별 대화(5~7월), ▲지역별 대화(8~9월), ▲종합 대화(10월), ▲결과 보고(11월)
 - 통일국민협약 사업 확산·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 확보 노력 병행

< 참고: 「통일국민협약」 추진 로드맵 >

2019~2020년	2021년		2022년~
o 국민참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 국민협약(안) 도출	o 국회 비준 등을 통한 통일국민협약 선포	\Box	o 통일국민협약 개선· 보완 등

0 지역사회 중심의 통일 논의·소통 활성화

-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 * 「평화통일원탁회의」: ▲(국내) 8개 시·도 지역, ▲(해외) 2개 지역
- 지역사회내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평화통일포럼' 개최(17개 시도별 4회 등 총 78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평화통일 담론 형성

o 인천 통일⁺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추가 설치 검토

- 인천 통일⁺센터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추가 설치 동력 확보, 단계적 으로 설치 확대
- 지자체 상황 및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추가 설치·운영방안 마련

ο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통일 관련 행사 지원 지속

- 민간 통일운동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 및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부)

□ 18년 실적

- o 평화·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 지속
 - 「통일교육 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화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舊통일교육지침서) 개편
- o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및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대상 통일교육 의무화(9.14 시행), △통일 교육주간 법제화 등 평화·통일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o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 제고
 -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 수요 증대 및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 개선
 - * 초·중·고 학생의 경우, '17년 대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2% → 63%, 대학생의 경우 47.9% → 49.1%로 증가(통일부, 2018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 통일교육위원·지역통일교육센터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상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교육 추진
 - * ▲사이버강의 콘텐츠 및 도서자료, ▲특집 프로그램 개발, ▲미래세대 및 취약 계층 맞춤형 자료 개발 등 통일교육자료 다종화

- o 한반도 평화공존·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평화·통일교육 추진
 -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참여·소통형 교수 기법 확대, 「평화·통일 교육 교재」등 콘텐츠 개발·보급
 - *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 교과목 신설

o 다양한 계층·지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 공감대 확산

- 통일교육주관(5월)을 계기로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지역사회 문화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등 범국민 캠페인 진행

o 통일미래세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업 하에 △교원 전문성 향상, △교육 자료 개발·보급 확대,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내실화 등 학교통일 교육 강화
-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운영, △통일·북한 강좌 개설 확대 등 대학사회내 통일교육 강좌 및 논의·연구 활성화
- 세대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담론' 창출과 2030세대와 교감할 수 있는 차세대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o 공공부문 및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통한 범정부 통일 의지 결집

-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모니터링 실시
- 「통일교육 기본계획」수립·이행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통일교육위원과 지역통일센터간 협업 등 다양한 통일교육 거버넌스 통해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통일부·외교부·민주평통)

□ 18년 실적

- ο 관련국 정부 관계자 대화를 통한 우리정부 정책 지지 확보
 -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정상 및 고위급 대화 실시
 - * (정상회담) ▲ 한·미 2회(통화 11회), ▲ 한·일 3회, ▲ 한·중 2회, ▲ 한·러 2회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등
 - * (평화통일전략대화) 5월 러시아, 9월 중국, 10월 독일, 11월 미국(통일부장관), 11월 EU·영국, 12월 일본(통일부차관) 등
 - 고위급·실무급 등 각급별 주한공관 당국자 등과 수시 소통
 - * 통일부 장관 주최, 주한공관 대사 정책설명회 3회 개최(▲EU회원국 대상 5· 12월, ▲주요국 대상 12월) 및 각급별 주한공관 관계자 85회 면담 등
 - * 외교부 장관 주최,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리셉션 개최(5.3, 105개 주한 공관 및 9개 국제기구 114명 참석)
 - 주요 국제회의 계기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공동성명 등에 반영
 - * ▲MIKTA 외교장관 공동성명(4월), ▲ASEAN 외교장관회의 공동코뮤니케(8월),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8월),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10월) 등

ο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국제사회 평화통일 논의 확산

- 「한반도국제포럼」(KGF)·「한반도정세라운드테이블」 국내회의 확대 및 해외 개최지 다양화
 - * 「한반도국제포럼」: ▲국내 2회(6월 전문가포럼, 7월 북한·통일학 신진학자포럼), ▲해외 5회(5월 카자흐스탄(북한 당국자 참가), 5월 일본, 9월 중국, 10월 독일, 11월 미국)
 - * 「한반도정세라운드테이블」: ▲국내 8회(6월 유력 언론인 방한단, 9월 외교 안보 전문가 방한단 대상 등), ▲해외 21회(5월 네덜란드·이탈리아, 7월 네팔· 미얀마·체코, 9월 라오스, 10월 제네바·브라질·이집트·알제리·카자흐스탄, 11월 캄보디아, 12월 러시아 등)

- 중·러 전문가 대화 및 독일 통일·EU 통합 사례 연구
 - * 해외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7월), 한중전문가대화(9월, 중국), 러시아 전문가 초청(10월),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10월, 독일) 등

ο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평화통일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마련

- 미·일·중 현지 연구소와 세미나 개최 등 주요국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지워
 - * KGF 주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일·중 현지 연구기관간 세미나 개최
- 50여개 재외공관에서 「평화통일공공외교」 사업 추진 및 재외동포 대상 현지 정책설명회 개최, 언론기고 등 지속
 - * 「평화통일공공외교」(56회) : 주재국 국민·교민 대상 세미나, 강연, 사진전, 영화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한반도 정책 홍보
 - * 재외동포 대상 설명회(8회) : 5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 9월 중국, 10월 독일, 11월 미국, 영국, 12월 일본

□ 추진 계획

ο 평화통일공공외교 내실화 및 다양화

- 주요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이를 토대로 국가별 맞춤형 소통·공공외교 전략 마련
- 각 국별 주요 정치적 일정 등 계기 활용, 정부·의회 주요 관계자 대상 「평화통일전략대화」 확대
- 국책연구기관 등과 해외유력 싱크탱크간 연구 교류 확대 및 지속 적인 협력관계 구축
- 지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인터내셔널 포럼 개최 및 뉴스레터 발송 등 정례적 소통 강화

- 「평화통일 공공외교」사업 및 재외국민 대상 정책설명회, 언론기고 등 지속 실시, 재외동포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역·대상 등 확대 검토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o 1.5트랙·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한 다층적 국제 협력기반 구축

-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舊KGF), △「한반도정세라운드테이블」, △한·중 전문가회의, △한반도 전문가 초청·교류, △해외평화통일 포럼 등 지속 확대
- 북한·통일문제 관련 해외 신진학자 포럼 개최 및 초청사업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신진 전문가 육성

o 한·독간 통일협력 사업 내실화

- 「한독통일자문회의」 정례 개최, 독일통일 총서 발간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V.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조달

1 추진 체계

- o 통일부는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
 - 이 과정에서 남북간 협의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
- o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점검·관리
 -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집행력 제고

---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시행령(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소요 재원

- o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남북협력기금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 예산 등에서 사용
 -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1조 1035억원 편성
 - ※【붙임2】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2019년도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통일부 일반예산은 1606억원이며,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사용
 - ※ 【붙임 3】 2019년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

붙임 1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비전

평화 공존, 공동 번영

3H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4H 저략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H 워칙

- ①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 ②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 ③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 ④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 5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7H 중점 추진 과제

- 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②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 ③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 ④「한반도 신경제구상」추진
- ⑤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 6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 **⑦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붙임 2 2019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예 산
1. 통일정책	6,341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6,341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6,341
2. 남북사회문화교류	20,530
① 남북사회문화교류	20,530
o 사회문화교류지원	20,530
3. 인도적문제해결	572,345
① 이산가족 교류지원	39,510
o 이산가족 교류지원	39,510
② 대북 인도적지원	532,835
o 구호지원	81,539
o 민생협력지원	451,296
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04,367
①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473,176
o 경제교류협력보험	9,500
o 경협기반(무상)	309,281
o 경협기반(융자)	119,655
o 경제교류협력대출	23,750
o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10,990
② 개성공단 조성	31,191
o 개성공단 운영 대출	15,071
o 개성공단 기반조성	16,120
사업비 합계	1,103,583

붙임 3 2019년 통일부 일반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예산
통일정책추진	985
국내통일기반조성	4,943
국제통일기반조성	1,622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462
정세분석 역량 강화	1,604
북한 종합 DB 운영(정보화)	801
북한자료센터 운영	282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94
납북피해자문제 해결지원	400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357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874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906
북한인권재단 운영	800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86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58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8,48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3,640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50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41,136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3,668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2,373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52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274
개성공단 상시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311
남북회담 추진	1,565
회담본부 시설운영	2,393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919
학교 통일교육 강화	6,758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305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575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290
정책연구개발(R&D)	390
통일업무지원	525
통일정책추진활동	2,461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3,794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632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2,813
합 계	160,640

^{※ &#}x27;19년도 주요사업 예산중 '19년 시행계획 이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제시

붙임 4 과제별 소관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 부처청
1. 북핵문제 해결 및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평화체제 구축 (2)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문체부
2 나브대하(2)	2-1 남북대화 정례화·상시화	통일부
2. 남북대화(2)	2-2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기능한 남북관계 구축	통일부
3. 남북 교류협력 (2)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통일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
	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통일부, 기재부 등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2)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통일부, 기재부, 문체부, 국토부, 산업부 등
	4-2 남북경협 준비	통일부, 기재부, 문체부, 국토부, 산업부 등
5. 인도적 협력 (3)	5-1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통일부, 국방부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통일부, 복지부, 산림청, 외교부 등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통일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농식품부, 여가부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등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3)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통일부, 민주평통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부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통일부, 외교부, 민주평통